

이천 증포5지구 칸타빌 에듀파크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합니다.)
- 2025.06.3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됩니다.
- 2025.06.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 인터넷청약 접수 및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지역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을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 규모

- 공급위치 :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107-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24층 / 총 5개동 / 총 355세대
- 주택 형 : (84.9784Am², 84.9910Bm², 102.7011m² 116.7297m², 118.1152m² 355세대)

구분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공용 면적	계약 면적	총공급 세대 수	특별공급 세대 수						일반분양 세대 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84A	84.9784	25.2062	110.1846	64.7482	174.9328	168	17	17	39	6	16	95	73
	84B	84.9910	26.7663	111.7573	64.7578	176.5151	66	7	7	16	2	6	38	28
	102	102.7011	29.3243	132.0254	78.2519	210.2773	18	0	2	0	1	0	3	15
	116	116.7297	34.2965	151.0262	88.9408	239.9670	61	0	7	0	2	0	9	53
	118	118.1152	35.6789	153.7941	89.9965	243.7906	42	0	5	0	2	0	7	35
							355	24	38	55	13	22	152	203

- 기관별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36조 85m²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구분		84A	84B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경기도	3	1	4
		서울특별시	3	1	4
		인천광역시	2	1	3
	국가유공자		3	1	4
	장기복무 제대군인		2	1	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1	3
	중소기업 근로자		2	1	3
합 계		17	7	2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 이상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600퍼센트 미만은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하며 대상자 추천 시 청약 주택형 필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 추천세대 여부는 기관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를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p> <p>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td> <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 colspan="2">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외국인인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청약통장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확정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정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장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재대군인 :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일정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5.11.07.[(금)예정]	청약홈 및 당사 홈페이지, 건분주택
사이버 건분주택 개관	2025.11.07.[(금)예정]	http://www.칸타빌에듀파크.com
특별공급 접수일자	인터넷 청약	청약홈 인터넷 청약 (청약홈 홈페이지 : http://www.applyhome.co.kr)
	건분주택 방문 청약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5.11.25.[(화)예정]	청약홈 홈페이지 (http://www.applyhome.co.kr)
계약 기간	2025.12.08.[(월)예정] ~ 2025.12.10.[(수)예정]	추후 개별통지

※ 2025.06.20. 개정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분주택 방문 신청에서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건분주택에서 접수 (10 : 00~14 : 00)가 가능합니다. 단, 건분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별도 문의)

※ 신청일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4) 기타 사항

- 상기 청약 계획은 인·허가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 2025.11.07.[(금)예정]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건분주택, 청약홈(<http://www.applyhome.co.kr>) 및 사이버 건분주택(<https://www.칸타빌에듀파크.com>)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반드시 확인 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에 최종 통지된 대상자는 통지 시 기재된 주택형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신청내역을 등록함에 따라 청약자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내역과 상이하게 청약접수가 불가합니다.

- 기관추천 기준에 따른 추천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지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마감시간 17 : 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 접수 중이라도 접수가 종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전 서류 확인 및 관계기관의 전산검색을 통해 구리시 거주요건, 과거당첨사실, 주택소유사실 등 입주대상자 및 세대원의 자격확인을 통해 부적격 사항 확인 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경쟁 시 탈락할 수 있습니다.)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정책 및 인·허가 승인 일정에 따라 건분주택 관람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현장 위치 및 건분주택 위치도



- 건분주택 :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106-39번지
- 사이버 건분주택 : <https://www.칸타빌에듀파크.com>
- 현장 :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107-2번지 일원
- 문의 : 031)638-2010